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일련번호: 1]

전라북도

주의·징계·훈계요구

제 목 사무처장 연봉책정 및 지급업무 등 부당 처리

기 관 명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과

내 용

1. 업무 개요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는 장애인체육회 「보수규정」 제4조 및 제21조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사무처장은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한편, 2014. 11. 3. 장애인체육회 「규약」 제41조 및 「사무처 운영규정」 제15조 등에 따라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장애인체육회의 現)사무처장(A)을 회장(전라북도지사)이 계약직 4호 상당(개방형 임기제 4호 상당)으로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체육회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도비 보조금(4,462,736,000원)으로 교부받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따라 매년 사무처장의 연봉을 책정하고 아래 [표 1]과 같이 2014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사무처장에게 총 621,934,920원을 연봉으로 지급하였다.

[표 1] 도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및 사무처장 연봉 지급 현황(2014 ~ 2022. 7.)

(단위: 원)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7월)
인건비 (도비 보조금)	4,462,736,000	277,096,000	338,069,000	384,153,000	435,942,000	485,795,000	539,660,000	612,135,000	662,956,000	697,000,000
사무처장 연봉 지급액	621,934,920	51,680,000	53,855,720	54,929,000	64,535,000	74,442,650	84,147,220	91,160,040	92,914,920	54,200,370

자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2. 사무처장 연봉 책정 및 조정 절차 위반

가. 관계 법령(판단 기준)

장애인체육회 「보수규정¹⁾」 제4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계약직은 연봉으로 지급하고, 연봉 책정 및 지급 방법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 제41조 등에 따르면 신규임용자의 연봉 책정은 연봉등급별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30% 범위내에서 별도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직급 등을 고려하여 임용대상자의 경력요건에 따라 연봉등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채용기간 동안 성과평가등급이 평균 ‘A등급’ 이상자로서 업무수행 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연도 기준연봉액의 130% 이내에서 연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는 사무처장의 연봉 책정 및 조정 사항에 대하여 임명권자인 회장이 연봉등급을 결정하거나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실적 등 연봉 책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회장이 최종 결정한 해당연도 연봉액을 사무처장에게 지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연봉 책정 및 조정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1) 2019. 1. 14.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 「보수규정」 개정으로 제4조는 제10조로, 제21조는 제33조로 조항이 변경됨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2014. 10. 28.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A 사무처장에 대한 임명동의를 얻고 같은 해 11. 3. 회장의 임명절차를 거쳐 위 사람을 임용한 후 아래 [표 2]와 같이 2014. 11. 19.부터 2017. 3. 15.까지 5차례에 걸쳐 사무처장의 연봉책정 및 정기조정을 하면서 연봉책정 및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무처장의 경력요건 등에 대해 회장에게 보고하여 회장이 직접 사무처장의 연봉액을 책정하거나 조정하도록 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위반한 채 사무처장 스스로 본인의 연봉을 책정하고 조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217,481,720원을 사무처장에게 지급하였다.

[표 2] 회장의 연봉책정 및 조정절차가 생략된 사무처장 연봉 지급 현황(2014. 11. ~ 2017. 3.)

(단위: 원)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3월	비 고
		11월 (최초)	12월 (재책정)				
연봉 지급액	217,481,720	44,723,000 ^{주1)}	51,690,000	53,855,720	54,929,000	57,007,000 ^{주2)}	

자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사무처장의 연봉책정 및 조정에 대한 결정 권한이 회장에게 있는데도 권한이 없는 사무처장이 스스로 자신의 연봉액을 결정함으로써 연봉책정 및 조정업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였다.

3. 2018 ~ 2021년 사무처장 연봉액 과다 산정·지급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애인체육회 「직제규정」 제5조(舊 사무처 운영규정 제15조), 「보수규정」 제4조 및 제21조 등에 따르면 직원의 기본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계약직²⁾(사무처장, 계약4호 상당)은 연봉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시·도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등에 따르면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고,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의 연봉, 봉급조정수당 지급률, 당해 연도의 성과연봉과 연봉한계액의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조정액을 합산하여 조정하며, 다만, 연봉의 감액 또는 증액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조정할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당해연도의 연봉은 당해연도의 기본연봉액과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당해연도의 기본연봉액은 전년도에 기책정된 기본연봉액과 전년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및 당해연도 처우개선편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종 기본연봉액 및 성과연봉액 책정시에는 백 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 원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다.

《 연봉액 산출식(예시) 》

◆ 2018년 연봉액 = ① 2018년 기본연봉액 + ② 2018년 성과연봉액

✓ ① 2018년 기본연봉액 = ① 2017년 기본연봉액 + ② 2017년 성과연봉 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가산기준액×가산율) + ③ 2018년 처우개선편 $[(①+②) \times \text{인상률}]$

✓ ② 2018년 성과연봉액 = ① 2018년 성과연봉 기준액 × ② 성과 등급별 지급률

※ 가산기준액, 가산율, 처우개선편(인상률), 성과연봉 기준액 및 성과등급별 지급률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예규로 발령함

※ 최종 기본연봉액 및 성과연봉액 책정시에는 백원단위에서 절상하여 천원단위로 한다(단, 백원단위가 0인 경우는 절사함)

따라서 장애인체육회는 당해연도 연봉액을 산정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명시된 산출식에 따라 전년도 기본연봉액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 및 요율, 당해연도 처우개선편을 합산한 금액만을 당해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고 규정(2012. 9. 22. 시행)되어 있음. 한편,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는 2017. 7. 15. 「사무처장의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사무처장의 직렬과 직급을 계약 4호 상당에서 개방형 임기제 4호 상당으로 개정하여 시행함

연도 기본연봉액으로 산정했어야 하며, 성과연봉액까지 합산한 금액(전년도 연봉 총액)을 당해연도 기본연봉액으로 산정하여 사무처장에게 연봉이 과다 지급되게 함으로써 장애인체육회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명시된 연봉액 산출식 및 산출과정이 명기된 예시문을 통해 당해연도 연봉액을 쉽게 산출할 수 있는 등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했다면 손쉽게 사무처장에게 연봉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연봉책정 업무를 태만히 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사무처장의 연봉액을 산정하면서 전년도 연봉 총액(기본연봉액 + 성과연봉액)을 전년도 기본연봉액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당해연도 기본연봉액을 산정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가산기준액 또는 처우개선분을 다른 기준³⁾을 적용하는 등 사무처장의 연봉액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4년간) 342,664,910원으로 과다 산정하여 정당금액(288,569,000원) 보다 총 54,095,910원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의 경우 전년도(2017년) 기본연봉액을 산정하면서 전년도 기본연봉액인 58,701,000원으로 하지 않고 2017년 기본연봉액에 2017년 성과연봉액(5,894,000원)을 합산한 전년도 연봉총액인 64,595,000원을 전년도 기본연봉액으로 잘못 산정(74,442,650원)함으로써 정당금액(68,384,000원) 보다 6,058,650원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2019년의 경우에도 전년도 기본연봉액을 산정하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84,147,220원)함으로써 정당금액(71,857,000원) 보다 12,290,220원이 과다 지급되

3) 2019년의 경우 개방형임기제 4호에 해당하는 가산기준액(40,619천 원)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직 4급 상당에 해당하는 가산기준액(38,367천 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2020년 경우 개방형임기제 4호에 해당하는 처우개선분 인상률(3.167%)을 적용하지 않고 호봉제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인상률(1.973%)로 산정함

는 결과를 가져온 반면, 전년도(2018년) 성과연봉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산정하면서 개방형임기제 4호에 해당하는 가산기준액이 40,619,000원인데도 일반직 4급 상당에 해당하는 38,367,000원으로 2,252,000원이 적게 그 기준을 정하여 산출(1,918,350원)함으로써 정당금액(2,031,000원) 보다 112,650원을 적게 산정하였다.

2020년의 경우에도 전년도 기본연봉액을 산정하면서 2018년 및 2019년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91,160,040원)함으로써 정당금액(73,134,000원) 보다 18,026,040원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가져온 반면, 2020년 처우개선분을 산정하면서 처우개선분 인상률을 개방형임기제 4호에 해당하는 3.167%로 하지 않고 호봉제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인상률(1.973%)로 산출(1,559,640원)함으로써 정당금액(2,113,680원) 보다 554,040원을 적게 산정하였다.

2021년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산출하지 않고 관련 규정에 맞게 사무처장의 연봉액을 산정(93,402,280원)하고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4조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에서 정한 개방형임기제 4호의 연봉상한액(92,915,000원)에 맞게 조정하여 지급(92,914,920원⁴⁾)하였으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과다 산정된 연봉액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 정당금액(75,194,000원) 보다 17,720,920원이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등에 명시된 연봉 산출식에 따르지 않고 사무처장의 연봉액을 산정하여 지급(총 342,664,830원)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당금액(총 288,569,000원) 보다 54,095,830원이 사무처장에게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한편, 같은 금액만큼 장애인체육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2021년 사무처장의 연봉액(92,915,000원)의 월액(92,915,000원 ÷ 12개월)은 7,742,910원으로 2021년에 사무처장에게 지급한 연봉액임(7,742,910원 × 12개월 = 92,914,920원)

4. 2022년 사무처장 연봉책정에 대한 회장의 결정권한 무력화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애인체육회 「규약」 제41조 및 「복무규정」 제3조 등에 따르면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직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고, 직원은 장애인체육인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39조의4 [별표 제3호]에 따르면 성실의무, 복종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때에는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등에 따르면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 그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장애인체육회 「문서규정」 제5조, 제15조, 제22조 및 「위임전결규정」 제4조 등에 따르면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끝난 즉시 결재일자 순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고 처리과별로 회장이 정하는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사무처장 성과평가 및 연봉책정” 등에 대해 회장이 결정한 사항을 따르는 등 복종의무를 준수하고,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과 규정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다함으로써 장애인체육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했어야 하며, 하급자

의 경우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여야 했다.

또한 사무처장의 성과평가 및 연봉책정 문서에 대한 회장의 결재가 끝난 즉시 결재일자 및 문서번호를 부여하여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여 하여야 했다.

나. 기초사실

장애인체육회는 2022. 2. 28. “2022년도 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성과평가 및 연봉책정(안)”(이하 ‘당초안⁵⁾’이라 한다)에 대해 지도·감독부서인 전라북도 ♠♠♠♠과에 방문하여 관련 팀장, 과장, 국장의 협조 결재 및 위 부서가 직접 회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대신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도 ♠♠♠♠과로부터 2022년도 사무처장의 연봉액이 과다 산정된 것으로 보이니 과거(2014 ~ 2021년)부터 재산정하고 같은 기간동안 결재가 완료된 사무처장의 연봉책정 문서를 보내 줄 것을 요청받은 후 관련 자료를 도 ♠♠♠♠과에 제출하였다.

이 후 같은 해 3. 2.부터 3. 4.경 도 ♠♠♠♠과에 방문하여 ♦♦♦♦장과 업무 담당자와 함께 과거(2018 ~ 2021년)의 사무처장의 연봉액 산출방식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상호 확인하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장애인체육회는 같은 해 3. 7. 2022년 사무처장 성과평가 및 연봉책정에 대한 “당초안”과 “수정안⁶⁾”, “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연도별 연봉책정 현황(2014 ~ 2021년)”, “기확정·지급된 사무처장 연봉액과 정당하게 산출된 연봉 수정액 대비표(2014 ~ 2021년, 엑셀자료)” 등 4건의 문서를 도 ♠♠♠♠과에 제출하였다.

5)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C가 2022. 2. 28. 도 ♠♠♠♠과에 방문하여 제출한 문서로 회장의 성과평가 등급 결정에 따라 책정될 수 있는 2022년 사무처장의 연봉책정(안)을 말하며, A등급(99,195,220원), B등급(96,136,230원), C등급(90,432,880원)으로 구분되어 있음

6) 2022. 3. 7. 도 ♠♠♠♠과에 제출한 “2022년도 사무처장의 성과평가 및 연봉책정(안)”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무처장의 연봉액 산출방식의 오류를 상호 확인·인정한 후 관련규정에 맞게 재산정한 문서로 회장의 성과평가 등급 결정에 따라 A등급(79,749,230원)으로 확정됨

이후 같은 해 4. 27. 도 ♠♠♠♠과는 2022년 사무처장의 성과평가 및 연봉 책정(안)에 대한 “당초안”과 “수정안” 2개의 문서와 함께 과거의 사무처장의 연봉액 산출방식 오류에 관한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연봉액 과다 지급분에 대한 반환명령은 물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수정안 내용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주문받는 한편, 수정안에 대한 회장의 결재문서를 다음 날 4. 28. 장애인체육회에 전달하였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2022. 5. 20.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아래 [표 3]과 같이 사무처장의 연봉을 지급하면서 2022. 4. 27. 회장이 결정한 연봉액을 준수하여 급여를 지급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2021년 사무처장의 연봉액 기준(총 92,915,000원, 월액 7,742,910원)으로 지급⁷⁾함으로써 정당 지급액(총 79,749,230원, 월액 6,645,760원)보다 3,291,450원(매월 1,097,150원)이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

더욱이 사무처장의 부당한 지시로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확정된 2022년 연봉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2022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연봉액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지급된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과다 지급분 연봉액(4,388,600원)에 대해서도 상계처리⁸⁾ 등의 적정한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연봉액이 2021년 연봉액 기준으로 부당하게 지급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7) 회장이 결정한 “2022년도 사무처장의 성과평가 및 연봉책정(안)”에 대해 사무처장은 본인이 수정안에 대해 결재한 바가 없어 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B와 C에게 자신의 연봉을 2021년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매월 임직원 급여지급(매월 20일) 전에 지시함

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4다26721) 내용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표 3] 2022년 연봉 확정액을 위반하여 부당 지급한 사무처장 연봉 현황

(단위: 원)

구분	계	'22년 1월	'22년 2월	'22년 3월	'22년 4월	'22년 5월	'22년 6월	'22년 7월	지급기준
부당 지급액 (a=b-c)	7,680,050	1,097,150	1,097,150	1,097,150	1,097,150	1,097,150	1,097,150	1,097,150	
실 지급액 (a)	54,200,370	7,742,910	7,742,910	7,742,910	7,742,910	7,742,910	7,742,910	7,742,910	'21년 확정된 연봉액
정당 지급액 (b)	46,520,320	6,645,760	6,645,760	6,645,760	6,645,760	6,645,760	6,645,760	6,645,760	'22년 4월 확정된 연봉액

자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2022. 4. 28. 회장의 결재문서(“2022년도 사무처장 성과평가 및 연봉책정(안)”)를 통보받았으므로 장애인체육회 「문서규정」 제22조에 따라 문서번호, 결재일자 등을 기재하여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데도 사무처장의 지시로 2022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위 문서를 등록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장애인체육회(연봉업무 담당자 및 지휘·감독자)는 2022. 4. 27. 2022년 사무처장 연봉액에 대한 회장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행위가 장애인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 등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무처장의 지시를 받은 업무감독자(B와 C)가 2022년 연봉액을 2021년 연봉액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E와 F에게 부당하게 지시하는 한편, 위 지시를 받은 연봉업무 감독자 및 E는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한편,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도 하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22년 사무처장의 연봉액에 대한 회장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등 복종 의무를 위반한 채 임의대로 연봉액을 지급함으로써 사무처장 연봉책정에 대한 회장의 결정권한을 무력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정당한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총 61,775,880원)을 취득함으로써 같은 금액만큼 장애인체육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⁹⁾를 가져왔다.

9) 2018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사무처장에게 과다 지급된 연봉액 61,775,880원이 회수·부과대상 금액임

5. 업무담당자들의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장애인체육회 C는 2014. 11. 19.부터 2021. 3. 31.까지 ○○○과 팀장으로서 사무처장의 연봉책정 및 조정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21. 4. 1.부터 2022. 7. 20.까지는 □□□과장(6급 상당)으로서 위 업무 및 임직원 급여 지급업무를 주관하였고, B는 2012. 3. 2.부터 2021. 3. 31.까지□□□과장(6급 상당)으로서, 2021. 4. 1.부터 2022. 7. 20.까지는 ●●●부장(5급 상당)으로서 사무처장의 연봉책정 및 조정, 임직원 급여 지급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하였으며, A는 2014. 11. 3.부터 2022. 7. 20.까지 사무처장(개방형임기제 4호 상당)으로서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 업무를 비롯하여 사무처의 전체 업무를 총괄·관장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들은 업무를 담당·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처장의 연봉책정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산출식에 따라 연봉책정 및 조정 업무 담당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연봉액을 산정하고, 장애인체육회 「복무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며, 하급자에게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상급자로부터 부패행위 강요 등의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여야 했다.

가. C의 경우

위 사람은 장애인체육회 「보수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연봉액을 산정해야 하며, 사무처장의 연봉책정 및 연봉조정에 관한 사항은 임명권자인 회장의 결재로 확정되고 이를 준수하여 확정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등 보수체계 운영에 관한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4. 11. 19.부터 2017. 3. 15.까지 5차례에 걸쳐 회장의

결재도 득하지 않는 등 사무처장의 연봉책정 및 조정절차를 위반한 채 A의 전결로 연봉을 책정·조정(총 217,481,720원)하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상신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명시된 연봉액 산출식 및 산출과정이 명기된 예시문을 통해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당해연도 연봉액을 쉽게 산출할 수 있었는데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4년간) 매년 사무처장의 연봉액을 산정하면서 전년도 연봉총액(기본연봉액 + 성과연봉액)을 전년도 기본연봉액으로 산출하는 방식으로 당해연도 기본연봉액을 산정하는 등 정당금액(288,569,000원)보다 총 54,095,910원을 과다하게 산정(342,664,910원)한 채로 매년 회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였다.

더욱이 2022. 4. 27. 회장의 결재로 2022년 사무처장의 연봉액(79,749,230원)이 확정되었는데도 5월 임직원 급여를 지급(매월 20일)하기 전 같은 해 5. 18.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출장자 A, B, D) 목적으로 경북일원에 출장(5. 17. ~ 5. 20.) 중인 B로부터 사무처장의 5월 급여는 전년도 연봉액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A의 지시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은 후 E에게 위의 내용을 전달하여 그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하였다.

더불어 같은 해 6월과 7월에도 임직원 급여지급 전날에 B와 함께 A로부터 5월 급여같이 전년도 연봉액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데도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급여 담당자에게 A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지시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사무처장에게 총 3,291,450원(1,097,150원×3월)이 부당하게 과다 지급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한편, 2022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2022년 사무처장 성과평가 연봉책정(안)”에 대한 회장의 결재문서를 문서등록대장에 등록하지 말라는 사무처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이행거부 의사표시 등의 항변도 하지 않은 채 문서번호, 결재일자를 기재하지 않는 등 2022년 8월 감사일 현재까지 문서등록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다.

그 결과 “2-나”, “3-나”, “4-다” 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나. B의 경우

위 사람은 장애인체육회 「보수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연봉액을 산정해야 하며, 사무처장의 연봉책정 및 연봉조정에 관한 사항은 임명권자인 회장의 결재로 확정되고 이를 준수하여 확정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등 보수체계 운영에 관한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사무처장 연봉책정 및 조정업무 담당 팀장(C)이 2014. 11. 19.부터 2017. 3. 15.까지 5차례에 걸쳐 사무처장 전결로 결재 상신한 연봉책정 및 조정(총 217,481,720원) 문서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하였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명시된 연봉액 산출식 및 산출 과정이 명기된 예시문을 통해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당해연도 연봉액을 쉽게 산출할 수 있는 등 업무 관리·감독자로서 이에 대한 검토가 용이하였는데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4년간) C가 결재 상신한 사무처장 연봉책정 문서에 대해 산출식에 맞게 연봉액이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 함으로써 정당금액(총 288,569,000원) 보다 54,095,910원이 사무처장에게 과다 지급 (총 342,664,830원)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2022. 3. 2.부터 3. 4.경 D와 도 ♠♠♠♠과에 직접 방문하여 ◆◆◆ 팀장, ⊕⊕⊕과 함께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봉액 산출방식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상호 확인하고 인정한 후 같은 해 3. 7. D에게 2022년 사무처장의 성과평가 및 연봉책정에 대한 수정안(79,749,230원)을 도 ♠♠♠♠과에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같은 해 4. 27. 회장의 결재로 2022년 사무처장의 연봉액(79,749,230원)이 확정되었는데도 5월 임직원 급여를 지급(매월 20일)하기 전인 같은 해 5. 18.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목적으로 경북일원에 출장(5. 17. ~ 5. 20.) 중 C로부터 5월 사무처장의 급여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 연락을 받은 후 사무처장에게 이를 보고한 후 전년도 연봉액 기준으로 지급하라

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데도 부당지시에 대한 이행거부 의사표시 등의 항변도 하지 않은 채 위의 내용을 전달하며 그대로 시행하라고 C에게 지시하였다.

더불어 같은 해 6월과 7월 임직원 급여지급 전날에 C와 함께 사무처장으로 부터 5월 급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는데도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C에게 그대로 지시하여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사무처장에게 총 3,291,450원(매월 1,097,150원)이 부당하게 과다 지급(총 342,664,910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

그 결과 “2-나”, “3-나”, “4-다” 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다. A의 경우

위 사람은 장애인체육회 「보수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연봉액을 산정해야 하며, 사무처장의 연봉책정 및 연봉조정에 관한 사항은 임명권자인 회장의 결재로 확정되고 이를 준수하여 확정된 연봉액을 기준으로 매월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등 보수체계 운영에 관한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사무처장 연봉책정 및 조정업무 담당 팀장(C)이 2014. 11. 19.부터 2017. 3. 15.까지 5차례에 걸쳐 사무처장 전결로 결재 상신한 연봉을 책정·조정(총 217,481,720원)하는 내용의 문서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하였다.

더욱이 2018년 자신의 연봉액이 2017년에 비하여 1년만에 약 1천만 원 정도가 급격히 증가(15.2%p)된 것으로 업무담당 팀장이 “2018년도 사무처장 성과평가 및 연봉책정(안)” 문서에 대한 결재를 상신하였는데도 다시 산출해 보라는 등의 지시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하는 등 연봉책정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의 연봉책정 문서에 명시된 당해연도 기본연봉액, 전년도 성과연봉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당해연도 처우개

선분 등 세부적인 사항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정당하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해 살펴 보지도 않은 채 연봉총액만 보고 결재함으로써 2018년부터 2021년까지(4년간) 자신의 연봉액을 정당한액(총 288,569,000원) 보다 54,095,910원을 과다 지급(총 342,664,910원)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또한 2022. 3. 2.부터 3. 4.경 도 ♠♠♠♠과와 함께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봉액 산출방식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상호 확인하고 인정한 후 같은 해 3. 7. 2022년 자신의 성과평가 및 연봉책정에 대한 수정안(79,749,230원)을 비롯하여 “당초안”, “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연도별 연봉책정 현황(2014 ~ 2021년)”, “기확정·지급된 사무처장 연봉액과 정당하게 산출된 연봉 수정액 대비표(2014 ~ 2021년, 엑셀자료)” 등 4건의 문서를 B 부장의 지시로 D가 위 지도·감독부서에 제출한 사실에 대해 2022년 3월 말 B 부장으로부터 보고받는 등 자신의 과거 4년간(2018 ~ 2021년) 연봉액이 과다 산정되어 지급되었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특히 2022. 4. 27. 수정안으로 회장이 2022년 자신의 연봉액을 결정하였고, 같은 해 4. 28. B와 C로부터 위 사실을 보고받았는데도 회장의 결정을 무시하고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급여를 회장이 결재로 확정된 2022년 연봉액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지 않고 전년도 연봉액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B와 C에게 부당하게 지시하는 한편, C에게 수정안에 대해 회장이 결재한 “2022년 사무처장 성과평가 및 연봉책정(안)”에 대해서도 문서등록을 하지 말라고 부당하게 지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2. 5. 17부터 5. 20.까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목적으로 경북일원에 B 부장, D와 함께 출장중 같은 해 5. 18. C에게서 5월 자신의 급여를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해 연락을 받은 B로부터 위 내용을 보고받은 후 전년도 연봉액 기준으로 지급하라고 C에게 지시하라고 B에게 부당하게 지시하여 정당한액(6,645,760원) 보다 1,097,150원이 많은 7,742,91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더불어 같은 해 6월과 7월에도 임직원 급여지급 전날에 B와 C에게 5월 급여와 동일한 기준으로 자신의 급여를 지급라고 지시하여 정당금액(13,271,520원)보다 2,194,300원(1,097,150원×2월)이 많은 15,458,82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는 등 회장의 사무처장 연봉액 결정권한을 무력화 하는 한편, 회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에 규정된 복종의무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정당한 수준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총 3,291,450원)을 취득하였고, 같은 금액만큼 장애인체육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2022. 3. 2.부터 3. 4.경 도 ♠♠♠♠과와 함께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연봉액 산출방식이 잘못 적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상호 확인·인정한 사실에 대해 2022년 3월 말 B로부터 보고받아 이에 대해 잘 알면서도 같은 해 5. 18. 도 ♠♠♠♠과로부터 “전라북도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관련 반환 조치 통보¹⁰⁾”(♠♠♠♠과-4608호) 공문을 접수한 후 같은 해 6. 22.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무처장에게 과다 지급된 연봉액(총 56,059,740원¹¹⁾)에 대한 반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위 처분을 직권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의신청¹²⁾을 하는 등 스스로 인정한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 불복함으로써 도 ♠♠♠♠과의 지도·감독 기능을 무력화 하였다.

그 결과 “2-나”, “3-나”, “4-다” 와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관련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위 장애인체육회는 감사결과를 받아 들이면서 사무처장 연봉책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는 감사처분 요구에 따라 자체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과실

10) 전라북도 ♠♠♠♠과는 2022. 5. 16.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무처장 성과연봉 산정 오류에 따른 연봉액 과다 지급분에 대해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같은 해 5. 18. 과다 지급분(총 56,058,740원)에 대해 반환 처분을 하였음

11) 전라북도 ♠♠♠♠과와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사무처장에게 과다 지급된 것으로 연봉액 산정 오류에 대해 2022년 3월 상호 확인·인정하고 재산정한 금액으로 연봉액 책정 단위를 천 원단위로 하지 않고 10원 단위로 산정하거나 2019년 성과연봉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가산기준액과, 2020년 처우개선분(인상률)을 잘못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 정당금액(54,095,830원) 보다 1,962,910원이 많게 산정된 금액임

12) 전라북도 ♠♠♠♠과는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의 이의신청에 대해 2022. 6. 29. 불수용 결정을 통보함(♠♠♠♠과-5021호)

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향후 장애인체육 행정전반에 있어서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하며 관리·감독기관인 전라북도 ♠♠♠♠과의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행정절차에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2022년도 사무처장 연봉지급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자인 회장의 결재 내용을 준수하여 당해연도 1 ~ 7월 급여 과다 지급분에 대해 8월부터 임용기간 만료일인 10월까지 소급 적용하여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장은

- ① 앞으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수하여 사무처장 등 임직원의 연봉책정 및 보수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회장이 결정한 2022년 사무처장의 연봉액을 준수하지 않고 2021년 연봉액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토록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복종의무를 위반한 채 연봉업무를 처리하여 회장의 연봉액 결정권한을 무력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등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장애인체육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관련자에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39조의4에 따라 징계 처분하고, (중징계)

[관련자]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개방형 4호 상당 A

- ③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무처장의 연봉액을 과다 산정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회장이 결정한 2022년 사무처장의 연봉액을 준수하지 않고 2021년 연봉액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토록 하라는 사무처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고 하급자에게 그대로 전달·지시하는 등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여 연봉업무를 처리한 관련자들을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39조의4에 따라 징계 처분하며,(경징계)

[관련자]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부장	@급	B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과장	#급	C

- ④ 2022년 5월 사무처장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2022년 사무처장의 연봉액을 준수하지 않고 2021년 연봉액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토록 하라는 사무처장의 부당한 지시를 C로부터 전달받은 후 사무처장의 5월 급여를 2021년 연봉액 기준으로 지급하는 등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하여 연봉업무를 처리한 관련자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관련자]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 팀장	&급	E
------------	--------	----	---

[일련번호: 2]

전라북도

주의·훈계요구

제 목 직원 복무관리 및 공용차량 관리 소홀

기 관 명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관 계 부 서 ■■■■■부 ■■■■■과

내 용

1. 업무 개요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는 「복무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출장, 휴가, 근무시간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라 공용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하고 있다.

2. 출장 등 복무관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장애인체육회 「복무규정」 제8조에 따르면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이하 ‘출장 직원’이라 한다)은 당해 직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장 직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출장 직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복명은 구술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는 근무지 밖으로 출장 시에는 회장에게 출장승인을 받

아야 하고, 출장직원이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때에는 지체없이 회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장애인체육회 임직원이 근무지 밖으로 출장하여 직무수행을 할 경우에는 출장 전에 상사에게 미리 출장신청을 하고 승인을 통해 근무지(장애인체육회) 밖으로 출장가야 했는데도 장애인체육회 직원 전체가 전라북도과 업무협의 등을 위해 ‘전주’ 지역을 출장할 때에는 출장승인을 전혀 받지 않고 출장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출장 직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장에게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아래 [표 1]과 같이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장애인체육회 직원 13명이 업무협의 등을 위해 관내(전주지역)로 출장을 나간 횟수가 총 52건¹⁾인데, 이 중 출장승인을 받거나 출장복명을 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표 1] 장애인체육회 관내 출장내역(2022년 1 ~ 7월)

(단위: 건, %)

출장기간	출장인원	출장건수	출장승인 건수	출장 승인률(%)	출장 복명 건수	출장 복명률(%)
2022년 1 ~ 7월	13명	52	0	0	0	0

자료: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사무처장 및 직원들이 실제로 출장목적에 맞게 출장업무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게 하였고, 특히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연봉협상 등의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등 자체 「복무규정」을 형해화 하였다.

3. 공용차량 사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1)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행사 참석 보고서, 업무수첩 내용들을 통해 추정된 건수(장애인체육회 직원들이 감사반에 제출)

장애인체육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5조 등에 따르면 장애인체육회 차량의 관리는 차량총괄부서²⁾에서 관장하며 차량관리, 정비 및 운행, 운전원의 복무관리를 전담하도록 되어 있고, 공용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일 또는 최소한 당일 차량총괄부서 및 2차 관리부서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차량사용자는 차량 사용 후 관리부서장에게 운행일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배차시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운행할 수 없고, 장애인체육회 차량은 직무로써 운전을 명받은 자와 업무를 목적으로 운행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운전할 수 없으며, 장애인체육회 업무 외에는 사적인 일에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배차 신청시간 내에 차량을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는 차량 반납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를 정확히 기재하고 차량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체육회는 공용차량을 사용할 때에는 차량배차신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 차량을 운행해야 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공용차량을 이용 시에 사전에 배차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운행하고, 운행 후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2020년 9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공용차량 5대 중 4대(그랜저 1대, 카니발 3대)를 관리·운행하면서 실제 152회를 사용했는데도 배차신청이나 승인을 한번도 받지 않는 한편,

2) 전북장애인체육회 「직제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차량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과’ 분장사무로 되어있음

차량 사용 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운행일지도 작성하지 않았다.

관련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위 장애인체육회는 감사결과를 받아 들이면서 향후 복무규정을 준수하여 근무지를 이탈하는 업무활동에 있어서 출장신청 및 복명 등의 행정절차를 철저히 하고,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철저한 관리 및 공용차량 이용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함께 행정절차 미이행시 사용제한 등을 통해 개선·운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장은

- ① 앞으로 관내출장 시에 출장승인을 받고 업무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공용차량 이용 시에는 사전에 차량관리부서장의 배차승인을 받아 운행하도록 하며, 차량운행 이후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하고,(주의)
- ② 공용차량업무를 소홀히 한 아래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훈계)

[관련자]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과장	#급	◆◆◆
전라북도장애인체육회	□□□과	\$급	▨▨▨